

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문성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460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문성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 
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 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 
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 
김태수, 김형재, 박환희,  
옥재은, 유정인, 윤기섭,  
이봉준, 이상욱, 이종태,  
이희원, 장태용, 정지웅,  
최민규, 최진혁, 허·훈,  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9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활용을 위해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치 및 종교단체, 청소년 유해 행사의 이용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.(안 제5조의3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정당법」, 「청소년보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)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
1. 「정당법」 제4조에 의거 하여 등록된 정당의 시당 전당대회를 제외한 당원 교육 등 모든 정당 행사
2. 종교의 포교, 의식
3. 종교의 기념일 및 축일에 대한 행사
4. 정치적 목적의 공연이나 행사
5. 「청소년보호법」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행사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5조의3(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)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「정당법」 제4조에 의거 하여 등록된 정당의 시당 전당 대회를 제외한 당원 교육 등 모든 정당 행사</u></li> <li><u>2. 종교의 포교, 의식</u></li> <li><u>3. 종교의 기념일 및 축일에 대한 행사</u></li> <li><u>4. 정치적 목적의 공연이나 행사</u></li> <li><u>5. 「청소년보호법」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행사</u></li> </ol>